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도서관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그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1과 같다.
2. 개인연구실 사용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1인 1일 2,000원으로 한다.
3. 강습·교육 참여에 대한 수강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
4.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은 선납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체료) ①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1책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되, 부과금액이 해당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제6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는 ‘별표1’로 하고,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에 대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구분	성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하
플라스틱 카드형	1,000원	800원	500원
RF 카드형	2,000원	1,500원	1,000원

[별표3]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강습개시 1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강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습개시 1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6조2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강습을 할 수 없거나, 강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비고		총 강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서울특별시립도서관및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p>	<p>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u>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u>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도서관법</u>」 제33조와 「<u>지방자치법</u>」 제136조 및 139조의-----</p>
<p>제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도서관장은 그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p>	<p>제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그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와 같다. 2. 개인연구실 사용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1인 1일 2,000원으로 한다. 3. 강습·교육 참여에 대한 수강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1과 같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신설></p> <p>4.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p> <p>② 사용료 및 수강료는 현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p>	<p>4.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p> <p>② 평생학습관내에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p> <p>③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은 선납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2조의2(연체료) ①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1책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되, 부과금액이 해당자료의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대출 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제6조2(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p>	<p>제6조2(사용료 등의 반환) ①----- ----- ----- -----</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p>1. 수강료를 납부한 후 해외 및 거주지 이전,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을 때</p> <p>2.~4. (이하 생략)</p> <p><신설></p> <p><신설></p>	<p>1.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p> <p>2.~4. (이하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에 대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